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41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성일종 · 유용원 · 최수진
이인선 · 인요한 · 이종배
고동진 · 박덕흠 · 김미애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무기 능력이 고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발발이 빈번해지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연계 활동 및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청소년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군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 군으로의 진출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등을 도모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청소년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국방인력의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사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한 보조 및 국유재산 등의 사용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세 감면 등(안 제5조)

정부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산서·결산보고서 등의 제출(안 제6조 및 제7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

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검사(안 제8조)

국방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에 업무에 관한 자료·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 대한 군사교육 등 사관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국방인력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방부장관은 청소년사관 교육과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사관 교육과 연맹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시설비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맹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의 계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예산서 등의 제출)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8조(업무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 연맹에 그 업무에 관한 자료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연맹의 동의 없이 연맹이 정한 수용품이나 표지를 제작·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획서·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
2. 제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9조를 위반하여 한국청소년사관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연맹의 동의 없이 연맹이 정한 수용품이나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으로 본다.